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O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○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포 함한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,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 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O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·위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8조)
-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체계를 확립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예방하고,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-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는 사이버보안, 사이버공 격·위협에 대해 정의하고, 동조 제3호에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제49 조 및 제79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며,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참여 증진, 관련 시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, 매년 사이버보안 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함.
- 안 제6조에서는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현황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7조에서 는 사이버공격·위협 발생 시 원인분석, 악성프로그램 차단, 보안 취약점 제거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.
- 안 제8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제9조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·이행 여부 및 실태 점검을 통해 보안 수준 강화를 도모하며, 실태 점검 결과 미흡 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, 대외비 등 사이버상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